

정 관

(개정 2025. 8. 29.)

학 교 법 인 통 명 학 원

학교법인 봉명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봉명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영일고등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가길 26(등촌동)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9.)

제 2 장 자 산 과 회 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4.)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이 집행 한다. <개정 2022. 7. 29.>

④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 7. 29.>

제9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 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2. 7. 29.>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7. 29.>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삭제

제12조의2(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2조의3(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2조의4(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2조의5(회의) 삭제
제12조의6(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제 3 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 인 (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 포함)
2. 감사 2 인 (추천감사 1인 포함)

제13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학원의 설립 목적 구현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제13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13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내에 추천이 없을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 한다.

제13조의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영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 하는 자 : 2인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 : 3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이사장 및 개방이사를 포함한다).
2. 감사 3년 (추천감사를 포함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2/3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규정에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본 법인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공개한 때
<개정 2022. 7. 29.>
4. 본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거나 또는 주요 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학부모등을 선동하거나 방조한 때
5.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본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제16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 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이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 7. 29.>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22. 7. 29.>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개정 2022. 7. 29.>

제16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2. 7. 2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제1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5.>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 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개정 2022. 7. 29.>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의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개정 2022. 7. 29.>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5.>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2. 7. 29.>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7. 29.>
-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29.>

제3절 행 동 강 령 <개정 2022. 7. 29. 신설 2025. 8. 29 >

제26조의2(청렴의무)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29.>

제26조3(행동강령의 목적)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 7. 29. 개정 2025. 8. 29>

제26조4(향응·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8. 29>
- ②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관련자로부터 재산적 이익, 접대·향응, 편의,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8. 29>

1. 학교법인 또는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5. 8. 29>
2. 학교법인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5. 8. 29>
- ③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8. 29>
 1.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 임원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25. 8. 29>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신설 2025. 8. 29>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신설 2025. 8. 29>
 4. 임원 및 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25. 8. 29>
 5. 임원 및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원 및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신설 2025. 8. 29>
 6. 임원 및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신설 2025. 8. 29>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신설 2025. 8. 29>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신설 2025. 8. 29>
- ④ 임원 및 교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원 및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8. 29>
- ⑤ 임원 및 교직원에게 또는 그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8. 29>

제26조5(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임원 및 교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8. 29>

제26조6(사적 이해관계 신고) 임원 및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사장(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29>

1.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25. 8. 29>

2. 임원 및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25. 8. 29>
3. 임원 및 교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25. 8. 29>
4.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신설 2025. 8. 29>
5. 임원 및 교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 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25. 8. 29>
6.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5. 8. 29>
7. 그 밖에 법인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신설 2025. 8. 29>

제26조7(위반행위 신고 및 조치 등)

- ① 누구든지 임원 및 교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학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9>
- ② 이사장(또는 학교장)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29>

제26조8(교육) 이사장은 임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29>

제26조9(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에는 이사, 소속 학교에는 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한다. <신설 2025. 8. 29>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 8. 29>
 1.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신설 2025. 8. 29>
 2.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신설 2025. 8. 29>
 3. 그 밖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25. 8. 29>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8. 29>

제26조10(세부사항의 위임)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 및 정관에 따라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행동강령 규정을 제정한다. <신설 2025. 8. 29>

제 4 장 수 익 사 업 <삭제, 2023. 4. 21.>

제27조(수익사업의 종류) <삭제, 2023. 4. 21.>

1. <삭제, 2023. 4. 21.>

제28조(수익사업의 명칭) <삭제, 2023. 4. 21.>

제29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삭제, 2023. 4. 21.>

제30조(관리인) <삭제, 2023. 4. 21.>

② <삭제, 2023. 4. 21.>

제 5 장 해 산

제3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

제33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4. 11. 22.>

제 6 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용 <개정 2022. 7. 29.>

제34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 하는자(교사자격증을 가진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사로 임용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한다. <개정 2022. 7. 29.>

③ 학교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④ 제3항의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

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위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

<신설 2022. 7. 29.>

⑤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⑥ 제3항의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1월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학교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⑦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제34조의2(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4조의3(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준용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34조의4(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으며,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기간제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1.25.>

제34조의5(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 분 보 장

제35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13. 개정 2022. 7.2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 11.13)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 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20. 11.13)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개정 2020. 11.13, 개정 2022.11.25)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22. 7. 29.>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개정 2020. 11.13)
 1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0., 2022. 7. 29.)

제36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7. 29.>
2.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개정 2022. 7. 29.>
3.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개정 2022. 7. 29.>

4. 제3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개정 2022. 7. 29.>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5. 제35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6. 제35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분할하여 휴직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 6의2. 제35조제1항제7호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이내로 한다. <개정 2022. 7. 29.>
7.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개정 2022. 7. 29.>
8. 제35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7. 29.>
9.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2. 7. 29.>
10. 제35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11. 제35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20. 11.13. 개정 2022. 7. 29.)

제37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2022. 7. 29. 개정 2022.11.25>

제38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1.13. 개정 2022.11.25.>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지급한다. <개정 2020. 11.13>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0. 11.13>

②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③ 제35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13. 개정 2022.11.25.)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13, 2022. 7. 29.)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1.13)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20. 11.13, 개정 2022. 7.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13, 개정 2022. 7. 29.)

③ 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또한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직위 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0. 11.13, 개정 2022. 7. 29.)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20. 11.13, 개정 2022.7.29)

⑤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13, 개정 2022. 7.29.)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13)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29.)

제39조의2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

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9>

제39조의3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29.>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신설 2022. 7. 29.>
- 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2. 7. 29.>
- 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2. 7. 29.>
-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22. 7. 29.>

제39조의4 (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2. 7. 29.>

제4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제41조의2(명예퇴직) ① 교원이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자는 교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 일전 1년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단, 명예퇴직 수당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1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29>

제41조의5(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7. 29.>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신규교원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7. 29.>
5.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징계포함)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신설 2022. 7. 29.>
6.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7. 29.>
7. 교감임용후보자 및 자격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7. 29.>
8. 인사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7. 29.>
9. 전체 교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신설 2022. 7. 29.>

제41조의6(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체 교원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신설 2022. 7. 29. 개정 2022.11.25>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9.>

제41조의7(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29.>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7. 29.>

③ 인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29.>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7. 29.>

제41조의8(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교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2. 7. 29.>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7. 29.>

제41조의9(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전자문서로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② 회의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9.>

제41조의10(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2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7. 29.>

제41조의11(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4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7. 29. 개정 2022.11.25>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2. 7. 29.>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개정 2022.11.25.>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개정 2022.11.25.>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개정 2022.11.25.>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22.7.29.)

제43조(삭 제)

제4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7. 29.>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삭제 <2021.12.10.>

제46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7.29.>

제46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 위원회의 출석인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29.>

제4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개정 2022.11.25>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29.>

제49조(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2 제1항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7.14.)

제50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25.>

② 간사와 서기를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51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2조 내지 제65조 (삭 제)

제3절 사 무 직 원

제66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12.10.>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4.11.22.>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11.22.>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2.11.25.>
8. < 삭 제 > 2025. 8. 29
9.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1.12.10. 2022. 7. 29.>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2.10. 개정 2022.11.25. 개정 2023.07.14>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 죄. <신설 2023.07.14.>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 된 죄. <신설 2023.07.14. >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스톱킹 범죄. <신설 2023.07.14.>
11.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2.10. 개정 2025.8.29.>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신설 2025. 8. 29>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신설 2025.8.29>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신설 2025. 8. 29>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신설 2025. 8. 29>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신설 2025. 8. 29>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2.10.)

제67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승진·승급·대우직원 선발·근속승진·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②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고, 공개전형의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2. 7. 29.>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7조의2(일반직원의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9.>

제67조의 3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2. 7. 29.>

제68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9.>

제69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의2(명예퇴직 수당) 일반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단, 명예퇴직수당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급을 받는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9.>

제70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22. 7. 29.>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제70조의6, 제70조의7을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29.>

②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7. 29.>

③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7. 29.>

제 7 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2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법인 사무국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고 등 학 교

제73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을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22. 7. 29., 2024. 11.22.>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하부조직) ① 고등학교 교무조직에 부를 두며, 부장은 보직교사로 보한다.

②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 원

제75조(정원) 법인 및 고등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76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고등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영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7. 29.>

제76조2(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를 적용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 (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7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다득표순으로 추천한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77조의2 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하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위촉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의2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8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의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1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80조 제3항을 위반 한 때.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8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83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7. 29.>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활동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22. 7. 29.>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29.>

14. 학교시설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모니터링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5. 8.29.>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⑥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 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⑦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의2(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83조 제1항 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 7. 29.>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의3(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제83조의4(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

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3조의5(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22. 7. 29.>

제83조의6(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7. 29.>

제83조의7(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3조의8(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②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7. 29.>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심의결과의 시행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83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제84조의2(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② 안건심의 또는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4조의3(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절 운영경비

제85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제85조의2(이사회지원)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5조의3(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제86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87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8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삭제>

제89조(위원회의 구성 등) <삭제>

제90조(위원장) <삭제>

제91조(위원의 의무) <삭제>

제92조(분쟁조정 신청) <삭제>

제93조(회의개최 등) <삭제>

제9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제>

제95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삭제>

제96조(간사) <삭제>

제97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삭제>

제98조(운영세칙) <삭제>

제 10 장 보 칙

제99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함봉혁	1920. 7. 10.	1974. 6. 7 ~ 1978. 6. 6	서울 중구 필동 2가 82-12
이 사	윤명기	1927. 1. 29.	1974. 6. 7 ~ 1978. 6. 6	서울 성동구 신당동 346-356
이 사	김현명	1927. 8. 19.	1974. 6. 7 ~ 1978. 6. 6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 98-156
이 사	심용운	1924. 4. 9.	1974. 6. 7 ~ 1976. 6. 6	서울 종로구 혜화동 197-11
이 사	함봉혁	1935. 12. 1.	1974. 6. 7 ~ 1976. 6. 6	서울 성동구 신당동 340-17
이 사	박종규	1918. 1. 1.	1974. 6. 7 ~ 1976. 6. 6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6-44
감 사	성기범	1942. 9. 19.	1974. 6. 7 ~ 1976. 6. 6	서울 성북구 석관동 330-8
감 사	정순경	1936. 3. 27.	1974. 6. 7 ~ 1975. 6. 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법인 봉명학원의 정관에 의해 임용된 교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04. 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후 임원의 임기 만료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24조의4의 개정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한다.

제3조(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4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03. 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2. 09)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청의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실행한다.

② 제2조(기능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 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2012년 5월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임용을 한다.

부 칙 (2014. 02. 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5.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2. 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8.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7.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4.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7.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8.29.)

이 정관은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7명
일반직 계	5명
4 급 (서기관)	1명
5 급 (사무관)	1명
6 급 (주사)	1명
7 급 (주사보)	1명
8 급 (서기)	1명
기능직 계	2명
6 등급(전기기사)	1명
7 등급(운전기사)	1명

(별표2) <개정 2022.11.25.>

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명
일반직원 계	8명
5 급 (사무관)	1명
7 급 (주 사 보)	3명
9급	4명

-끝-